

“ 2차 피해입니다. ”

전 구성원(기관장, 상급자, 구성원, 업무 담당자)에게
2차 피해 방지 책무가 있음

2차 피해의 개념

피해자, 신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, 조사신청, 협력 등을 이유로 각종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
2차 피해의 유형

-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-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-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-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,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 허위 소문 유포, 근무시간 중 무분별한 탄원서 작성 등

**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하고,
행위자는 단호하게 조치합니다.**

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조치

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아래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

- 무급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
- 근무장소 변경
- 다른 직위로의 전보
-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
- 그 밖에 임용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등

피해 발생사실 또는 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

행위자에 대한 조치

성희롱·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 아래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
(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)

- 징계의결요구
- 직위해제
- 다른 직위로의 전보
-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
- 감사·감찰·인사·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제한
-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 등

공공부문

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대응



여성가족부



한국여성인권진흥원

성희롱의 개념

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·요구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·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성적 언동·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- **육체적 행위**: 원치 않는 입맞춤, 포옹, 신체부위 접촉
- **언어적 행위**: 음란한 농담, 성적인 외모평가, 성관계 회유 등
- **시각적 행위**: 음란물 게시, 신체를 뽐내 보이는 것
- **기타**: 성적 굴욕감·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

판단기준

-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함
- 남녀, 동성 모두 성희롱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
- 일회적인 성적언동, 불특정인에 대한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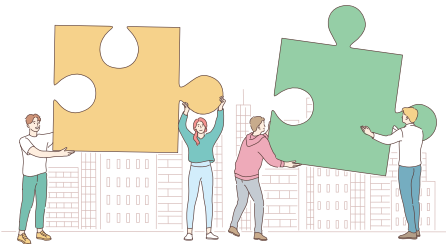
성폭력의 개념
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

- **강간, 강제추행**: 폭행·협박을 가하여 간음, 추행하는 행위
- **준강간, 준강제추행**: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, 추행하는 행위
- **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(추행)**: 업무 등 관계로 보호·감독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·위력으로 간음(추행)하는 행위
- **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**: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, 퇴거불응하는 행위
- **디지털 성폭력**: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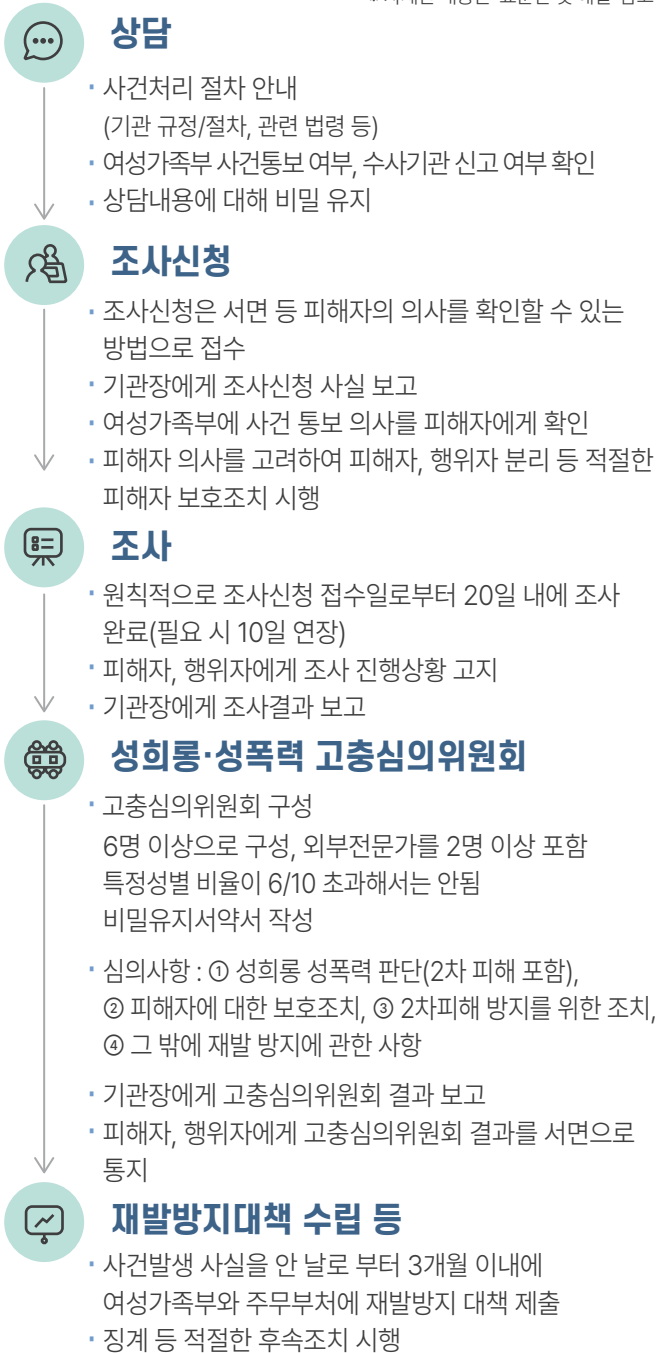
성희롱·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제출 점검 강화

- 공공기관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,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사건 대응체계 운영
(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)
- 단,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*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(3개월→1개월)이 단축
* 중앙행정기관의 장, 자자체장(교육감 포함)
- 통보된 사건과 접수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례 회의 구성하여 운영(여성가족부 내부 규정)
- 공공기관의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공개
(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)
-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('24. 4. 19.시행)
(성폭력방지법 제22조 및 제38조)



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세부절차

※ 자세한 내용은 '표준안 및 해설' 참고



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

대상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 중 진단을 요청하거나,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
(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적용기관)

내용

기관별 성희롱 방지·대응체계, 성희롱 사건처리과정, 성희롱 발생 양상·대처역량 등 진단 및 개선 권고

진행절차

순서	추진내용	수행기관
① 사전단계	· 수요 파악 · 대상기관 선정	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
② 조직진단	· 기관 현황, 규정 등 자료 검토 ·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· 기관장 등 면담 · 진단일 방문 및 자문 실시 · 진단문결과 분석	한국여성인권진흥원
③ 개선권고	· 진단결과 및 개선권고 사항 통보	여성가족부
④ 조치계획	· 개선권고 기관 조치계획 제출 (여성가족부)	개선권고 기관

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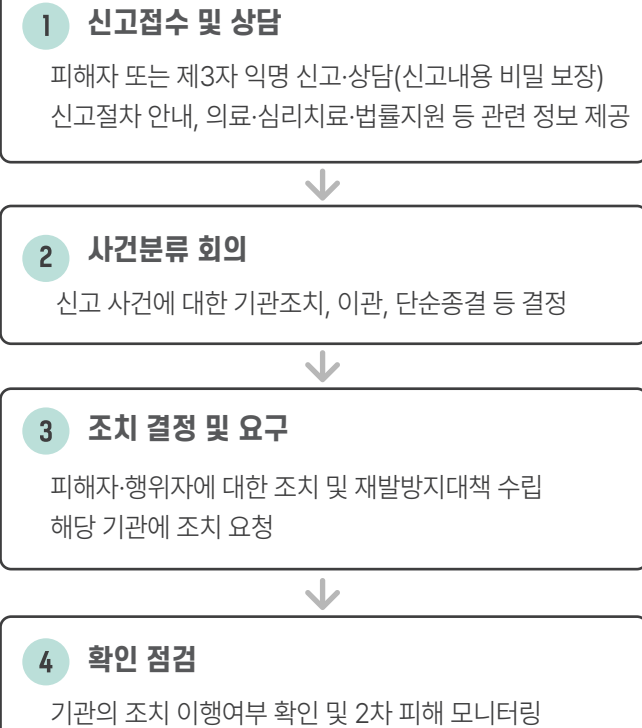
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·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
대표번호 02-735-7544

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신고센터

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란?

국가·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

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



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

홈페이지 : www.mogef.go.kr
상담전화 : 02-735-7544
수행기관 : 한국여성인권진흥원
성희롱·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